

의 정 정 보

2005 - 11 6. 23

목 차

I. 중앙기관 정보	1
II. 타 시·도 의회동향	6
III. 개정 법령	8
부 록 : 행복한 책 읽기	9

I. 중앙기관 정보

① 7월부터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

- 정부는 지난 6월 20일 「국가공무원복무규정」 및 「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 규정」에 대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·의결했다.
- 이에따라 오는 7월부터 경찰·소방·교정·교육 등 특수분야를 제외한 일반부서 공무원들은 매주 토요일을 휴무하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시행, 공무원 특별휴가일수 축소, 관공서의 공휴일도 감축된다
-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
 - 공무원특별휴가 중 재해구호(5일), 출산휴가(90일), 배우자출산(3일), 보건휴가(每생리기 → 무급화, 임신한경우 검진 : 현행 유지), 본인결혼(7일), 부모사망(7→5일), 자녀·자녀의 배우자 사망(3→2일), 조부모사망(5→2일)등은 일부 일수를 축소 조정
 - 포상휴가, 장기재직휴가, 퇴직준비휴가, 경조사휴가 중 자녀결혼, 회갑, 형제자매·삼촌사망, 탈상 등 여타의 특별휴가는 '06년 1월 1일부터 모두 폐지
 - 각급학교의 교원은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며, 장기재직휴가의 경우는 '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자에 한하여 '06년 6월 30일 까지 경과규정을 두어 사용가능
-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 중 4월 5일 식목일은 '06년부터, 7월 17일 제헌절은 '08년부터 각각 공휴일에서 제외는 하되, 식목일은 기념일로 제헌절은 국경일로 그대로 유지된다.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연간 총 16일 이다

<참 고> : 공무원특별휴가 조정

구 분		현 행		조 정 안	비 고
		대 상 / 요 건	일수		
출 산		출산 전·후 부여	90	90	
보 건		매 생리기	1	무급	
		임신한 경우 검진	1	1	
포 상		총리표창이상 등 주요업무 성공적 수행	6일이내	-	
장기 재직		20년 이상 재직자	10	-	
퇴직 준비		퇴직예정일 3월전부터	3개월	-	
재해 구호		풍수해등 피해공무원 재해지역 봉사활동	5일이내	5	
경 조 사	결 혼	본인	7	7	
		자녀	1	-	
	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	-	
	회 갑	본인 및 배우자	5	-	
		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	1	-	
	출 산	배우자	3	3	
	사 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7	5(△2)	
		<u>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·조부모·외증조부모·외조부모</u>	5	2(△3)	밑줄부분 인정
		자녀, 자녀의 배우자	3	2(△1)	
	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(형·형수, 동생·제수))	3	-	
	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(삼촌·숙모)	3	-	
		탈 상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2	-
	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·조부모·외증조부모·외조부모		1	-	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	1	-	

② 05. 8. 1부터 주민등록표 기록을 전산관리로 일원화

- 행자부는 '05. 8. 1부터 주민등록표 수기관리를 폐지하고 전산관리로 일원화 할 계획임을 밝혔다.
-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선 읍·면·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업무처리가 간소화되고 처리시간이 단축되어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등, 그동안 행정자치부가 추진해 온 지방행정혁신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.
- 읍·면·동사무소의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그간 수기와 전산관리를 병행하여 업무부담이 많았으며, 금번 조치로 주민등록업무량의 30~40%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
 - 아울러 사무량 감축 외에 원장구매, 등기우송비용 등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.
- 또한, 행정자치부 관계자에 따르면 수기관리 중단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하여 연간 500억원 정도로 추정하면서, 지방자치단체에서 절감되는 인력과 예산을 주민서비스 개선에 투입하는 등 지방행정혁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았다.
- 앞으로, 행자부에서는 수기관리가 중단되는 개인별·세대별 주민등록표 총 7천 2백만건을 금년부터 3개년에 걸쳐 DB로 구축하여 영구 보존함은 물론
 -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거주지 무관 온라인 열람 및 교부 등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.

③ 보건복지부,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마스터플랜 확정

- 보건복지부는 도시와 농어촌간에 현저한 보건복지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해 『제1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(‘05~’09)』을 확정·발표했다.
- 이 계획은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, 2조 9,331억원 규모의 5개년계획으로 아래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. (2개분야 40개 과제)
 - 우선, 농어촌의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6.8%(대도시 6.4%, 중소 도시 7.8%)로 이미 고령사회에 도달하였음을 감안하여
 - ① 치매노인 그룹홈(63개소) 신설 및 재가노인복지센터(74 → 202개소) 설치로 노인요양보장 인프라 개선
 - ② 주거·건강증진·여가·문화 등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합노인복지단지 4개소를 시범운영한 후 단계적 확대
 - ③ 노인복지회관 미설치 지역(62개 군)에 연차적 확충을 유도하고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을 연계한 여가프로그램 운영 활성화
 - ④ 노인의치보철 지원대상을 만 70세이상 기초수급자에서 농어촌지역의 경우 만65세이상으로 확대 등 적극적 노인복지증진시책 강구
 - 농어촌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기초수급자 선정시 소득 및 재산 평가방법 등에 대한 특례 확대, 농촌형 특화·소규모형 자활후견기관 운영(19개소), 및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 프로그램(IDA) 시범사업 추진
 - 농어촌지역에 소규모 국공립보육시설(500개소) 신설 및 만5세아 무상보육을 2006년 농어촌부터 전면 실시(43,941명)

- 농어촌 실정에 맞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(73→89개소) 확충 및 주택개조사업(총 4천가구) 등 장애인복지증진 기반 조성
- 농어촌지역 단위농협 1,163개소 등의 민간보유 물적·인적자원이 지역사회 복지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강구
-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50%까지 확대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수준을 중위소득 등급(12→18등급)까지 인상
- 농어촌 공공보건의료기관(보건소 등 1,143개소) 및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병원(20개소) 노후시설 현대화로 공공보건의료 공급기반 개선
- 농어촌 취약지역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·설치하고 특수구급차(120대)를 확대 배치하여 응급의료체계를 구축
- 농어촌 노인의치보철사업 대상을 65세이상 기초수급자로 확대(현 70세이상)하고, 5대암 조기검진사업을 현재 395천명에서 720천명으로 확대
- 농어촌 정신보건사업을 위해 정신보건센터(75개소) 운영을 지원하고, 여성질환 실태조사 및 건강 프로그램을 보급
- 한방산업단지 조성(3개소),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 60개소 및 지방공사의료원 한방진료부 10개소 설치·운영을 통해 한방산업 육성 및 한방의료 접근도 제고

○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어촌보건복지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추진계획 등을 매년 수립토록 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간 연계·협력을 강화해 나아 가기로 하였다.

Ⅱ. 타 시·도 의회동향

① 서울시의회, 소규모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위해 관련조례 개정

- 서울시의회는 지난 5월 31일 본회의를 열어 의원발의로 제안한 건축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.
- 이 조례안에 따르면 소규모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가 5회에서 3회로 줄어드는 것을 골자로 하며
 - 연면적 85㎡(25.7평)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 건축법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불법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총 3회까지 부과한다 규정하고 있다
- 서울시는 그동안 이행 강제금을 5회까지 부과해 왔으나, 부산광역시 등 일부 광역시에서 3회 이내로 완화함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.
- 이에 서울시의회에서는 소규모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영세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서울시측에 개선을 여러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의원발의로 제안하게 됐다.
- 이번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을 완화하므로써 영세서민들은 약 50억원의 부과금 혜택을 보게 됐다.
- 한편,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1년 3만 8,096건이던 무허가 건축물이 2003년에는 4만 6,955건으로 증가하는 등 불법건축물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줄이면 불법건축물 양산을 부추기게 된다는 반대입장으로 보이고 있다.

② 부산광역시의회, 중학생대상 ‘모의의회’ 운영

- 부산시의회는 지난 5월 시의회 회의실에서 청소년들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울 수 있도록 중학생 모의의회를 교실을 열었다.
- 중학생 25명씩 4개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등 4가지 주제를 학생 스스로 선정하여 운영하므로서 민주적 회의운영과 절차를 직접 체험케 하는 계기가 됐다.
- 이에 학생들은 모의교실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함양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앞으로 큰 역할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.

③ 인천광역시의회, 남북아리랑 교류사업 추진

- 인천광역시의회는 남북한의 문화적 동질감 회복을 위한 ‘우리민족의 소리 남북아리랑 교류사업’을 오는9월 인천에서 펼치기로 하였다.
- 제16회 인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('05.9.1~9.4)를 맞아 펼쳐지는 이번 남북한 문화예술 교류사업은 북한 예술단 화가 초대전과 북한선수단과 응원단을 위한 연극공연이 마련된다.
- 시의회 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는 인천예술단체 총연합회와 인천미술협회, 인천연극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북한 문화·예술공연행사 개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.
-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화예술분야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‘우리민족의 소리-남북아리랑’ 공연과 인천출신 북한 인민화가 김득 초대전‘ 등을 개최기로 협의했다.

Ⅲ. 개정 법령

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률(시행 '05.6.1)

- 공공단체 등이 그 시설내에 매점 운영 등을 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
- 그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정부투자기관,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등으로 규정
-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정착금의 금액한도를 종전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인상
-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인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가족수에 따라 정착금을 차등 지급.

②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(시행 '05.12.1)

- 해당지역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지하수관리를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지하수의 수위저하·수질오염 등의 지하수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도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
- 지하수개발·이용신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수개발·이용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신고의 효력이 상실
- 지하수개발·이용시공업자는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지하수 개발·이용시설의 공사 불가